

발언1.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가명처리 정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이 소송은 어떤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내가 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SK텔레콤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가 SKT나, SKT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다른 기업에 의해 사람을 감시하거나 살상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와 결합되어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고, 처리 방식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 같은 명목으로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데, 이용자에게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도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되며 정보주체는 그 처리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고 구분짓더니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용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가명처리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기정보결정권이 산업논리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단지 한 개인의 패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명처리는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파기환송심은 헌법이 보장한 상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의 처리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작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장선미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대법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된 국가이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실 겁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권리 구제를 하는 사법은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사법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경우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헌에 명백히 반해서 정보의 처리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문헌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명시된 내용이 가명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 처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문헌에 반하여서 해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법을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산업 육성이나 데이터 활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 있는 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법을 창출해내는 것은 사법의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공개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문헌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결을 자의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1심과 2심 법원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충실히 해석 했던 것을 대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내세워서 월권하여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의 본질을 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때에 정당한 판단, 법의 문헌에 합치하는 판단, 진정한 사법을 재판에서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3.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AI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을 내세우면서 AI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AI가 무엇입니까? AI는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AI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는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AI 산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송에서 AI를 비롯한 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고객인 우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했던 가명 처리가 일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 처리를 구분하는 해석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설령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 처리를 구분하는 이런 해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 그 자체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일반 처리이건 가명 처리이건 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정지해 달라는 정보주체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합니다.

AI 시대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또 우리의 동의 없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돼서 처리되고 판매되고 제공되고 공유되지 않고 우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K텔레콤이라는 거대 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저희는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부당하게 이용하는 관행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고등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고, AI 시대 위기에 처한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